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24-98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4. 8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,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폭넓게 위촉하기 위해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,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재난의 정의(안 제2조)

나. 안전관리위원회 구성(안 제8조)

다.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(안 제11조)

라.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직 개편사항(2024. 2. 1. 자) 반영 등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(정의), 제11조(지역위원회), 16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, 제18조(재난안전상황실), 제25조(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)
- 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」 제23조(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·운영), 제29조(시·도안전관리계획 및 시·군·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4. 7. 11. ~ 7. 31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새마포담당관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5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자연재난(폭염 및 한파를 포함한다)과 나목의 사회재난(미세먼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”를 “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명”을 “25명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20명”을 “25명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의 발령

제41조제2항 중 “상황실은 재난대책 사무실에 설치하고”를 “상황실 및”으로, “본관 1층 종합상황실에”를 “내에”로, “본부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60조제1항 중 “그 소관”을 “매년 그 소관 재난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”을 “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”으로 한다.

별표1, 별표2,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2조(정의) ① (생략)</p> <p>② “재난”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<u>자연재난(폭염 및 한파를 포함한다)과 나목의 사회재난(미세먼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u></p> | <p>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 <u>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.</u></p> |
| <p>제8조(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2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제8조(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25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1조(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2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</p> <p>⑤ ~ ⑨ (생략)</p> | <p>제11조(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25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|

제17조(대책본부의 기능) 대책본부
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 ~ 7. (생략)

제41조(재난안전상황실 설치) ① (생략)

② 자연재난 관련 상황실은 재난 대책 사무실에 설치하고 사회재난 관련 상황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본관 1층 종합상황실에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.

제60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된 서울특별시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

제17조(대책본부의 기능)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의 발령

6. ~ 8. (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

제41조(재난안전상황실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상황실 및 -----

내에 -----

----- 구청장-----

제60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--

매년 그 소관 재난 및 -----

② -----

-----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-----

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별표1

재난수습 주무부서

| 재난 분야 | 재난유형 | 재난수습 주무부서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| | 국(통제관) | 과(담당관) |
| 자연 재난 | (생략) | | |
| | 1~8.(생략) | | |
| 사회 재난 | 9. 정보·통신분야 관련피해 | 재정관리국 | 디지털재정과 |
| | 10.(생략) | | |
| | 11.(생략) | | |
| | 12.(생략) | | |
| | 13.(생략) | | |
| | 14. 화생방 관련 피해 | 행정지원국 | 자치행정과 |
| | 15.(생략) | | |

* 위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이외의 재난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」의 사무분장에 따른다.

별표2

실무반 편성과 임무

1. 자연재난의 경우

| 실무반 | 임무와 역할 | 실무부서 (지원부서)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황관리총괄반 | 1) 재난상황 관리팀 (생략) | |
| | 2) 상황 보고팀 (생략) | |
| | 3) 상황관리 총괄팀 (생략) | |
| | 4) 행정 지원팀 (생략) | |
| 협업가능반 | 가)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·지급 독려 | 주민생활 복지과 (생활보장과, 어르신동행과, 장애인동행과) |
| | 나)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·관리(수용·급식 등) | |
| | 다) 재해구호물자 확보·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| |
| | 라)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| |
| | 마)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| |
| | 바) 사망·실종자 유족 대책, 응급생계구호 실시 | |
| | 사) 재난피해자 응급구호물품 지급 및 주거 대책 추진 | |
| | 아)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등 | |
| | 자) 민간단체 등 의연금품 및 구호물자 접수·지원 | |
| | 2) 긴급통신 지원반 (생략) | |
| 3) 시설응급 복구반 (생략) | | |

<부칙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표1

재난수습 주무부서

| 재난 분야 | 재난유형 | 재난수습 주무부서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| | 국(통제관) | 과(담당관) |
| 자연 재난 | (현행과 같음) | | |
| | 1~8.(생략) | | |
| 사회 재난 | 9. 정보·통신분야 관련피해 | 재정관리국 | 스마트정책과 |
| | 10.(생략) | | |
| | 11.(생략) | | |
| | 12.(생략) | | |
| | 13.(생략) | | |
| | 14. 화생방 관련 피해 | 행정지원국 | 재난총괄부서 |
| | 15.(생략) | | |

* 위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이외의 재난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」의 사무분장에 따른다.

별표2

실무반 편성과 임무

1. 자연재난의 경우

| 실무반 | 임무와 역할 | 실무부서 (지원부서) |
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황관리총괄반 | 1) 재난상황 관리팀 (현행과 같음) | |
| | 2) 상황 보고팀 (현행과 같음) | |
| | 3) 상황관리 총괄팀 (현행과 같음) | |
| | 4) 행정 지원팀 (현행과 같음) | |
| 협업가능반 | 가)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·지급 독려 | 복지정책과 (장애인사회보장과, 어르신동행과, 가족행복지원과) |
| | 나)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·관리(수용·급식 등) | |
| | 다) 재해구호물자 확보·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| |
| | 라)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| |
| | 마)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| |
| | 바) 사망·실종자 유족 대책(장례 및 유가족 편의 지원), 응급생계구호 실시 | |
| | 사) 재난피해자 응급구호물품 지급 및 주거대책 추진 | |
| | 아)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등 | |
| | 자) 민간단체 등 의연금품 및 구호물자 접수·지원 | |
| | 2) 긴급통신 지원반 (현행과 같음) |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| 4) 에너지 기능 복구반 | (생략) | 공익복지과 맑은환경과 (주력상생과, 도시계획과) 재난총괄 부서 (재무과, 보행행정과) 교통행정과 (주차관리과, 부동산정보과, 보간행정과) |
| 5)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| (생략) | |
| 6) 교통 대책반 | (생략) | |
| 7) 의료· 방역반 | (생략) | (위생과, 재산세과) 깨끗한 마포과 (건축지원과) 감사담당관 (일자리창년과, 경제진흥과, 장수과) 마포경찰서 지치행정과 |
| 8)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| (생략) | (체육진흥과, 교육정책과) 의안과 (건강동행과, 세무2과) 마포소방서 홍보 미디어과 (세미포담당관, 가족복지지원과, 아동청소년과) |
| 9) 사회질서 유지반 | (생략) | |
| 10) 자원봉사 지원반 | (생략) | |
| 11) 수색· 구조· 구급반 | (생략) | |
| 12) 재난수습 홍보반 | (생략) | |
|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| (생략) | |

2. 사회재난의 경우 (생략)

별 표 4

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

1. 자연재난(호우·대설·태풍·지진 등) 발생 시 편성 기준

| 편성 기준 | 비상단계 | 비상 1단계 | 비상 2단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
| 본 부 장 | | | |
| 차 장 | | | |
| 총괄조정관 | | | |
| 통 계 관 | | | |
| 담 당 관 | | | |
| 실무반원수 | | | |
| 반 장 | (생략) | | |
| 실 무 반 | 1) 상황관리 총괄반 | 재난상황 관리팀 | |
| | | 상황보고팀 | |
| | | 상황관리 총괄팀 | |
| | | 행정지원팀 | |
| | | |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) 시설유급 복구반 | (현행과 같음) | 도로개선과 (건축지원과) |
| 4) 에너지 기능 복구반 | (현행과 같음) | 맑은환경과 (문화예술과) |
| 5)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| (현행과 같음) | 재난총괄 부서 (행정지원과) |
| 6) 교통 대책반 | (현행과 같음) | 교통행정과 (주차관리과) |
| 7) 의료· 방역반 | (현행과 같음) | 보간행정과 (위생과) |
| 8)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| (현행과 같음) | 깨끗한 마포과 (자원순환과) |
| 9) 사회질서 유지반 | (현행과 같음) | 감사담당관 (관광정책과) 마포경찰서 |
| 10) 자원봉사 지원반 | (현행과 같음) | 지치행정과 (체육진흥과) |
| 11) 수색· 구조· 구급반 | (현행과 같음) | 의안과 (건강동행과) 마포소방서 |
| 12) 재난수습 홍보반 | (현행과 같음) | 홍보 미디어과 (세미포담당관) |
|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| (현행과 같음) | |

2. 사회재난의 경우 (현행과 같음)

별 표 4

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

1. 자연재난(호우·대설·태풍·지진 등) 발생 시 편성 기준

| 편성 기준 | 비상단계 | 비상 1단계 | 비상 2단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
| 본 부 장 | | | |
| 차 장 | | | |
| 총괄조정관 | | | |
| 통 계 관 | | | |
| 담 당 관 | | | |
| 실무반원수 | | | |
| 반 장 | (현행과 같음) | | |
| 실 무 반 | 1) 상황관리 총괄반 | 재난상황 관리팀 | |
| | | 상황보고팀 | |
| | | 상황관리 총괄팀 | |
| | | 상황관리총 괄팀 | |
| | | |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) 협업 가능 반 (a) | 가.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| 주민생활복지(지원부서: 생활보장과, 어르신행복과, 장애인행복과) |
| | 나. 긴급통신 지원반 | 디지털재정과(지원부서: 문화예술과, 관광정책과) |
| | 다. 시설응급 복구반 | 도로개선과(지원부서: 물관리과, 공원녹지과) |
| | 라. 에너지기능 복구반 | 맑은환경과(지원부서: 주택상생과, 도시계획과) |
| | 마.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| 재난총괄부서(지원부서: 재무과, 보행행정과) |
| | 바. 교통대책반 | 교통행정과(지원부서: 주차관리과, 부동산정보과) |
| | 사. 의료·방역반 | 보건행정과(지원부서: 위생과, 재산세과) |
| | 아.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| 깨끗한미포과(지원부서: 건축지원과) |
| | 자. 사회질서 유지반 | 감시담당관(지원부서: 일자리청년과, 경제진흥과, 징수과) |
| | 차. 자원봉사 지원반 | 자치행정과(지원부서: 체육진흥과, 교육정책과) |
| 카. 수색·구조· 구급반 | 의약과(지원부서: 건강동행과, 세무2과) | |
| 타. 재난수습 홍보반 | 홍보미디어과(지원부서: 새마포담당관, 기획홍보지원과, 이동청소년과) | |
| 3) 재난관리 협업기관(β) | | (생략) |

비고(근무방법) (생략)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2) 협업 가능 반 (a) | 가.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| 행정지원팀 복지정책(지원부서: 장애인보호장기, 어르신행복과, 기획홍보지원과) |
| | 나. 긴급통신 지원반 | 스마트정책과(지원부서: 부동산정보과) |
| | 다. 시설응급 복구반 | 도로개선과(지원부서: 건축지원과) |
| | 라. 에너지기능 복구반 | 맑은환경과(지원부서: 문화예술과) |
| | 마.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| 재난총괄부서(지원부서: 행정지원과) |
| | 바. 교통대책반 | 교통행정과(지원부서: 주차관리과) |
| | 사. 의료·방역반 | 보건행정과(지원부서: 위생과) |
| | 아.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| 깨끗한미포과(지원부서: 자원순환과) |
| | 자. 사회질서 유지반 | 감시담당관(지원부서: 관광정책과) |
| | 차. 자원봉사 지원반 | 자치행정과(지원부서: 체육진흥과) |
| 카. 수색·구조· 구급반 | 의약과(지원부서: 건강동행과) | |
| 타. 재난수습 홍보반 | 홍보미디어과(지원부서: 새마포담당관) | |
| 3) 재난관리 협업기관(β) | | (현행과 같음) |

비고(근무방법)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일부개정안 제8조(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) 제2항의 구성 인원 확대 (20명 이내 → **25명 이내**)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편성 필요

제8조(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)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.

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**25명 이내의**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(이하 생략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① (생략)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(이하 생략)

3. 미첨부 사유

- 일부개정안에 따라 위촉직 위원 인원 확대로 직접적인 비용 발생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024년 기준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편성액은 140천원 (70,000원*1명*2회)임
- 운영수당 및 기타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이수정 |
| 연락처 | 02-3153-9464 |